

의안번호	2215378
의 퇴 인	서영석의원
회 답 일	2026.2.5.
추계번호	25C71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920만원, 2031년 9,520만원 등 5년간 총 5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안 제2조의4)	74	-	-	-	-	74	14.8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안 제2조의5)	95.2	95.2	95.2	95.2	95.2	476	95.2
합 계	169.2	95.2	95.2	95.2	95.2	550	1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4 (화장품관리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화장품 경쟁력강화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조의5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제2항)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 ○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연구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6항) 1. 화장품 안전·품질 분과위원회 2. 화장품 산업 육성 분과위원회 3. 화장품 수출 지원 분과위원회 ○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4 (화장품관리기본계획)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2조의5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화장품관리기본계획(안 제2조의4)
 - 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화장품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것으로 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1차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2026~2030)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400만원을 준용¹⁾
 - 추계 결과, 추계 첫 해에 7,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화장품관리기본계획(안 제2조의4)	74	-	-	-	-	74	1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안 제2조의5)

-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으로 하며,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위원회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원과 회의 횟수 등은 유사사례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준용함
- 추가재정소요는 협의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원 정수) 정원 25인 중 민간위원 17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²⁾
 - (회의 횟수)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준용하여 본회의 1회, 분과위원회(3개) 16회(대면 2회, 서면 1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준용하여 대면 20만원, 서면 15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4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안 제2조의5)	95.2	95.2	95.2	95.2	95.2	476	9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정원 30인 중 당연 10인, 위촉 20인을 임명함

3)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